경상북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47호

2025년도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 변경공고

2025년도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변경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0일

경상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 260명

가.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

계 급	직 렬(직 류)	선 발 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계		46명	
연구사	수의연구(수 의)	3명	경북도3
7급	수 의(수 의)	43명	경북도17, 포항1, 김천3, 안동3, 구미2, 영주2, 영천1, 상주1, 경산1, 의성2, 청송2, 청도3, 성주1, 예천1, 봉화1, 울진2

나. 제2회 경력경쟁임용시험

계 급	직 렬(직 류)		선 발 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계			87명	
연구사	학예연구(학예일반)		5명	청도2, 예천2, 울릉1
	농업연구	작 물	4명	경북도4
		농업환경	3명	경북도1, 구미2
		산업곤충	1명	예천1
		원 예	3명	경북도3
		생명유전	1명	경북도1
		농식품개발	1명	경북도1
	보건연구(공중보건)		3명	경북도3
	환경연구(환 경)		8명	경북도8
9급	식품위생(식품위생)		3명	경북도1, 영천1, 울릉1
	의료기술(의료기술)	임상병리	4명	영주1, 예천1, 봉화2
		방 사 선	7명	포항1, 구미1, 영주1, 문경1, 영덕1, 고령1, 예천1

계 급	직 렬(직 류)		선 발 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9급	의료기술(의료기술)	물리치료	6명	포항1, 구미2, 상주1, 청도1, 울릉1
		치과위생	12명	포항1, 경주2, 김천2, 안동2, 구미1, 영주1, 상주1, 문경1, 경산1
		보건의료정보관리	1명	울릉1
	시 설	일반토목	17명	경북도4, 포항2, 구미3, 영덕1, 예천2, 봉화2, 울릉3
		건 축	8명	경북도1, 포항2, 청송1, 예천2, 울릉2

다. 제3회 경력경쟁임용시험

구 분	계 급	직 렬(직 류)		선 발 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계				127명	
소 계				89명	
일반모집	연구사	기록연구(기록관리)		2명	청송1, 울진1
	9급	공 업(일반전기)		4명	경북도4
		해양수산(선박기관)		3명	경북도1, 경주1, 안동1
		환 경	일반환경	1명	경산1
			수 질	4명	안동1, 경산3
		시 설	일반토목	46명	김천5, 안동7, 문경3, 의성5, 청송5, 영양1, 고령2, 칠곡6, 예천10, 봉화2
			건 축	29명	김천2, 안동5, 영주3, 문경3, 의성3, 청송3, 영양1, 고령1, 예천8
소 계				38명	
기술계 고교졸업(예정)자 구분모집	9급	공 업	일반기계	6명	경북도2, 포항1, 구미1, 경산1, 봉화1
			일반전기	3명	경북도1, 포항1, 안동1
		농 업	일반농업	4명	경북도1, 김천1, 구미1, 청송1
			축 산	2명	경산1, 봉화1
		녹 지(산림자원)		3명	경북도2, 경산1
		보 건(보 건)		2명	포항1, 문경1
		시 설	일반토목	14명	경주2, 안동1, 구미1, 영주2, 상주1, 영양1, 영덕1, 청도1, 예천2, 울릉2
			건 축	4명	영덕1, 예천1, 울릉2

2 시험과목

가.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

계 급	직 렬(직 류)	시 험 과 목
연구사	수의연구(수 의)	필기시험 없음(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선발)
7급	수 의(수 의)	

나. 제2회 경력경쟁임용시험

※ 비공개 시험과목 : 전과목(파란색 글자)

계 급	직 렬(직 류)		시 험 과 목	
연구사	학예연구(학예일반)		필수(2)	**문화사, 한국문화사**
			선택(1)	**박물관학, 국가유산관리학** 중 1과목
	농업연구	작 물	필수(2)	**재배학, 실험통계학**
			선택(1)	**작물생리학, 토양학** 중 1과목
		농업환경	필수(2)	**토양학, 농업환경화학**
			선택(1)	**실험통계학, 재배학** 중 1과목
		산업곤충	필수(2)	**잠학개론, 양잠학**
			선택(1)	**곤충학**
		원 예	필수(2)	**재배학, 원예학**
			선택(1)	**시설원예학, 원예작물육종학** 중 1과목
		생명유전	필수(2)	**생물학개론, 유전학**
			선택(1)	**분자생물학, 생화학** 중 1과목
		농식품개발	필수(2)	**식품학, 실험통계학**
			선택(1)	**식품영양학, 식품가공학** 중 1과목
	보건연구(공중보건)		필수(2)	**보건학, 역학**
			선택(1)	**환경보건학, 보건행정학** 중 1과목
	환경연구(환 경)		필수(2)	**환경공학, 환경화학**
			선택(1)	**환경계획, 환경위생학** 중 1과목
9급	식품위생(식품위생)		필수(3)	**화학, 식품위생, 식품미생물**
	의료기술(의료기술)		필수(3)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시 설	일반토목	필수(3)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건 축	필수(3)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다. 제3회 경력경쟁임용시험

※ 비공개 시험과목 : 파란색 글자

구 분	계 급	직 렬(직 류)		시 험 과 목	
일반모집	연구사	기록연구(기록관리)		필수(5)	**기록관리학개론(전자기록물관리 포함), 기록물분류·평가(기술포함), 전자기록물관리, 기록보존학, 행정법총론**
				선택(1)	**역사학, 문헌정보학** 중 1과목
	9급	공 업(일반전기)		필수(3)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해양수산(선박기관)		필수(3)	물리, **선박일반, 선박기관**
		환 경	일반환경	필수(3)	**환경공학개론, 화학, 환경보건**
			수 질	필수(3)	**환경공학개론, 화학, 환경보건**
		시 설	일반토목	필수(3)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건 축	필수(3)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기술계 고교졸업 (예정)자 구분모집	9급	공 업	일반기계	필수(3)	물리, 기계일반, 기계제도
			일반전기	필수(3)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농 업	일반농업	필수(3)	생물, 재배, **농업기초기술**
			축 산	필수(3)	**축산, 가축사양, 초지**
		녹 지(산림자원)		필수(3)	생물, **산림자원, 임산가공**
		보 건(보 건)		필수(3)	생물, **환경보건, 공중보건**
		시 설	일반토목	필수(3)	물리, 토목일반, 측량
			건 축	필수(3)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과목의 시험문제는 **공개**하며, **경상북도인사위원회 자체출제** 과목의 시험문제는 **비공개**합니다.

※ 기술계고교 졸업(예정)자 구분모집

▶ '물리'는 물리학Ⅰ, '생물'은 생명과학Ⅰ, '측량'은 실무과목이나 이론으로 출제되며, 2009년 교육과정의 '측량' 교과를 포함

3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1)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항 4지 택일형(문항당 1분 기준)

2)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순

※ 합격자 결정 방법은「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결정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일 전에 인성(역량)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일정 등 세부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할 예정입니다.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1) 제1·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면접시험 성적(우수, 보통, 미흡)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며, 평정등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수 등급 : 합격. 다만 "우수"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 보통 등급 :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우수"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 미흡 등급 : 불합격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추가면접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 수의연구사 및 수의7급 :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구분 시행

1)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제1차 시험 합격자만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4 응시자격

가. 공통 응시자격

1)「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및 제66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기준일 :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 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 응시자격과 관련하여 기준일 현재 법령의 개정이 있는 경우 개정된 법령을 적용합니다.

2) 거주지 제한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응시 가능합니다.

(※ 단, 수의연구, 수의7급은 거주지 제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25년 1월 1일 이전까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거주지 요건 확인 기준

1.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예시 ①「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시행 2023.7.1.」에 따라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되었으므로 종전 **경상북도 군위군**에 거주한 기간은 **경상북도 거주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구광역시 거주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②「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시행 1995.3.1.」제9조에 따라 달성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되었으므로 종전 **경상북도 달성군**에 거주한 기간은 **경상북도 거주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구광역시 거주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2. 거주지 요건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3.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3) 응시연령

계 급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7·9급 및 연구사	18세 이상	2007. 12. 31. 이전 출생자

※ 9급 기술계고교 졸업(예정)자 구분모집의 경우, 고교 3학년생 중 조기 입학한 17세(2008. 12. 31. 이전 출생자) 해당자도 응시 가능

나. 학력 및 자격(면허)증 제한(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유효한 것)

1)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

계 급	직 렬(직 류)	해당 학력 및 자격(면허)증
연구사	수의연구(수 의)	수의사
7 급	수 의(수 의)	

2) 제2회 경력경쟁임용시험

계 급	직 렬(직 류)		해당 학력 및 자격(면허)증
연구사	학예연구 (학예일반)		고고학, 역사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또는 민속학을 전공하고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농업연구	작 물	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원예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기상학, 수자원학, 약학, 한약학, 환경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천연물화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하고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농업환경	농학, 자원식물학, 식물학, 원예학, 농화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생화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수자원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하고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산업곤충	잠사학, 천연섬유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농공학, 곤충학, 생물학, 천연고분자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화학, 농화학, 유전공학 또는 약학을 전공하고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원 예	원예학, 조경학, 농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농생물학 또는 식품가공학을 전공하고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생명유전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미생물학, 식물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화학공학, 농학, 원예학, 농화학, 생물공학, 천연물화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정보학을 전공하고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농 식 품 개 발	식품학, 식품영양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식품위생학, 식품화학, 식품생물공학, 식품효소공학, 식품미생물학, 생화학, 농화학, 단백질공학, 식품저장학, 천연물화학, 육가공학, 유가공학 또는 조리과학을 전공하고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보건연구 (공중보건)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하고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계 급	직 렬(직 류)		해당 학력 및 자격(면허)증
	환경연구 (환 경)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하고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9급	식품위생(식품위생)		위생사, 영양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	임상병리사
		방 사 선	방사선사
		물리치료	물리치료사
		치과위생	치과위생사
		보건의료 정보관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시 설	일반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 축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3) 제3회 경력경쟁임용시험

구 분	계 급	직렬(직류)	해당 학력 및 자격(면허)증
일반 모집	연구사	기록연구 (기록관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2011. 5. 23. 이전에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2011. 5. 23. 이전부터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은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까지 이수하여야 함)
	9급	공 업 (일반전기)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해양수산 (선박기관)	기관사 1급 내지 5급
		환 경 (일반환경)	·기 술 사 : 대기관리, 수질관리 ·기 사 : 대기환경, 수질환경 ·산업기사 : 대기환경, 수질환경

일반 모집	9급	환 경 (수 질)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2·3급
		시 설 (일반토목)	·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 설 (건 축)	·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① 위 표에서 '전공한 사람'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 학 또는 동일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을 말합니다.

※ **동등 이상의 학력**은 대학원에서 해당 학 또는 동일계통 학의 전공자(석·박사 학위)도 포함됩니다.(대학에서 비전공자라도 대학원에서 해당 학 또는 동일계통 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취득할 수 있으면 응시가능)

※ '해당 학문 또는 관련 계통의 학문' 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속 학교장(단과대학장) 명의로 발급된 추천서에 따라 판단하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붙임1]동일계통학과 증명서 및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함

② **연구직의 경우 [붙임1]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및 추천서】** 를 총장(단과대학장)의 명의로 발급받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기술계고교 졸업(예정)자 구분모집

1) 선발직렬(직류)의 학과와 관련된 **특성화고·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고)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졸업자의 경우, 졸업일과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일 경우에만 응시 가능합니다.

◈ **응시자격요건 :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응시 가능합니다.**

가. 경상북도에 소재한 기술계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 포함)

나. 경상북도 거주지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해당 학교의 장은 아래 기준에 따라 관련학과 해당여부를 엄밀히 판단한 후 경상북도로 추천(1인 1직류만 추천가능)**

가.「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별표 9]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와 직접 관련된 학과를 이수한 사람[붙임2-참고1]

- 이와 유사한 관련학과에 포함되는 직무분야별 해당학과는 **[붙임2-참고3]【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9호) 직무분야별 학과】**의 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함

나. 추천 가능한 학업성적

① **전문교과**의 성취도가 **평균 B등급 이상**이고, **그 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② **보통교과**의 **평균 석차비율이 50%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등급이 4.5 이내**인 사람
(졸업자는 고등학교 **全학년 성적**, 졸업예정자는 **고등학교 1~2학년 성적** 기준)

※ 성취평가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

▷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취득한 사람으로서 **全학년 석차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50% 이내인 졸업(예정)자

※ 2026년부터 선발예정직렬과 관련된 전문교과 이수(전문교과 총 이수단위 중 관련 전문교과 이수단위 비율 50% 이상)요건을 적용함

다. 대학에 진학(전문대,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모든 대학의 재학·휴학자도 포함)**하지 아니한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대학 진학 후 중퇴한 사람(2025. 7. 4. 기준)은 대학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간주함**
- 추천대상자가 대학에 진학한 경우 중퇴를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후 추천
- 응시연령은 원칙적으로 18세 이상(2007. 12. 31. 이전 출생자)이나, **고교 3학년생 중 조기입학한 17세(2008. 12. 31. 이전 출생자) 해당자도 응시 가능**

※ 추천에 필요한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등 관계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공직 임용 취소와 함께 해당 학교는 향후 3년간 추천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해당 학교에서는 [붙임2] **【기술계고교 졸업(예정)자 구분모집 절차 및 방법안내】**에 따라 추천대상자 전원의 관련서류를 취합하여 **2025. 6. 30.(월) ~ 7. 4.(금)까지 우편으로 경북도청 인재복지과 인재채용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학교 추천과 별도로 해당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개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5 시험일정

시 험 명	접수기간	취소기간 (추가취소기간)	응시표 출 력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 표
제1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2. 24. ~ 2. 28.	2. 24. ~ 3. 4.	3. 7.이후	서류전형	**※3.5.(수)까지 서류제출**	-	3. 12.
				면접시험	3. 12.	**3. 19.**	3. 27.
제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3. 10. ~ 3. 14.	3. 10. ~ 3. 17. (3. 31. ~ 4. 2.)	4. 4.이후	필기시험	4. 4.	**4. 19.**	4. 30.
				면접시험	4. 30.	**5. 19. ~ 5. 23.**	6. 10.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 서류 제출기간					3. 10. ~ 3. 14.	
	가산점 등록기간(취업지원 대상자, 의사상자 등, 가산대상 자격증)					4. 19. ~ 4. 21.	
제3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7. 21. ~ 7. 25.	7. 21. ~ 7. 28. (10. 13. ~ 10. 15.)	10. 17.이후	필기시험	10. 17.	**11. 1.**	11. 20.
				면접시험	11. 20.	**12. 3. ~ 12. 5.**	12. 17.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 서류 제출기간					7. 21. ~ 7. 25.	
	가산점 등록기간(취업지원 대상자, 의사상자 등, 가산대상 자격증)					11. 1. ~ 11. 3.	

※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등은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s://www.gb.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서류제출 기간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며 불합격 처리됩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 수 처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해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하며, 원서접수 및 취소와 관련된 내용은 인터넷원서접수센터(☎1522-06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 접수된 내역을 확인(응시수수료 결제완료 등)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2) 접수시간 : 접수기간 중 24시간(단, 시작일 09:00부터, 마감일 18:00까지)

3) 응시수수료(7급 및 연구사 7,000원, 9급 5,000원) 및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및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응시원서 제출일 당시 **「민법」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라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에 포함되며(응시수수료 납부 후 개인별 환급), 증빙서류 제출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원서접수 시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은 규격 3.5㎝×4.5㎝(해상도 100dpi 이상)의 상반신 사진으로, 응시자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개인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특히, 모자 또는 선글라스 착용·배경사진 등은 사용불가)**

나. 접수 시 유의사항

1)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1개의 임용예정기관을 반드시 선택하여야 하며, 임용예정기관별로 선발된 후 임용됩니다.

2) 제3회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17개 시·도 중복접수 제한)

3) **장애인 등 응시자는 본인의 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편의지원 신청은 원서접수 시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하며 증빙서류를 경북도청 인재복지과 인재채용팀으로 우편 제출하여야 합니다.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3]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접수기간에는 입력사항(응시지역, 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단, 가산대상 자격증은 필기시험 실시일을 포함한 3일 이내 등록 및 수정 가능)**

5) 취소기간(추가 취소기간 포함) 내에 원서접수를 취소할 경우 응시수수료를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6) 응시표는 시험장소 공고일부터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7 가산점 적용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의사상자 등 가산점은 1개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등의 가산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 ~ 마' 참고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1개의 자격증만 인정)	

나.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실시일 전일까지 취업지원대상자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2)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3)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의 여부와 가산비율은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에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보훈상담센터 ☎1577-0606)

다. 의사상자 등(필기시험 실시일 전일까지 의사상자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와 그 배우자 또는 자녀

2)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3) 의사상자 등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의사상자 등의 여부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5) 또는 시·군·구 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의사상자 등 가산점 대상자가 '나' 항의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도 받을 수 있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라.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실시일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자격·면허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 제외)**

구 분	연구사		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합니다.

※ 직렬(류)별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는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7의4]에 의하며, [붙임4] **【가산점 적용 및 가산대상 자격증 일람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1)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10% 또는 5%) 또는 의사상자 등 가산점(5% 또는 3%)과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5% 또는 3%)은 각각 하나씩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2)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실시일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 필기시험 실시일을 포함한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하며, 잘못 입력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는 가산비율·보훈번호 / 의사상자 등은 가산비율·의사상자 증서번호 입력

3) 가산점 등록기간

시 험 명	등 록 기 간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	해당없음
제2회 경력경쟁임용시험	2025. 4. 19.(토) ~ 4. 21.(월)
제3회 경력경쟁임용시험	2025. 11. 1.(토) ~ 11. 3.(월)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필기시험 문제의 경우에는 해당 시험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유효한 법령, 고시, 판례 등을 기준으로 정답을 구해야 합니다. 다만, 개별 과목 또는 문항에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합니다.**

시 험 명	필기시험일	출제 기준일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	해당없음	
제2회 경력경쟁임용시험	2025. 4. 19.	2025. 2. 28.
제3회 경력경쟁임용시험	2025. 11. 1.	2025. 9. 30.

나. 응시자는 공고문, 응시표, 답안지 등에서 정한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응시자격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은 경상북도인사위원회에서 별도 공고하는 장소에서 실시됩니다.

마.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바. 부정행위자 등에 대하여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에 따라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사.「지방공무원법」제43조의3 및「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 구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아. 시험문제는 인사혁신처에 위탁하여 출제된 문제에 한하여 공개하며, 그 밖의 모든 문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자.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임용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7에 따라 4년 이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없습니다.

차.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s://www.gb.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카. 기타 시험관련 사항은 경상북도 인재복지과 인재채용팀(☎054-880-4583~7),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s://www.gb.go.kr) '시험정보' - 질의/응답(Q&A)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및 취소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1522-06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